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910
----------	-----

2021. 12. 16.(목)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 2021년 11월 11일
- 나. 발 의 자 : 송미애 의원 등 7인
- 다. 회부일자 : 2021년 11월 15일
- 라. 상정일자 : 제39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
(2021년 12월 1일 상정의결)
-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송미애 의원)

가. 제안이유

- 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하여 환경, 사회, 지배 구조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
- 도지사로 하여금 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추진계획을 수립 하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도내 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함

(안 제6조)

- ESG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충청북도 ESG 경영 지원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제9조)
- ESG 경영 지원에 관한 정보공유, 연구·조사 등을 위하여 도, 시군, 교육청,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노학)

가. 제출배경

- ESG* 경영은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 사회(S) 및 지배구조(G) 부문의 성과를 확대하기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의미, 즉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경영활동
* E(환경 environment), S(사회 social), G(지배구조 governance)
-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탄소중립과 같은 주요 현안들이 발생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만들기 위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ESG가 기업 경영의 최대 화두로 떠오름
 - 글로벌 탄소중립 선언,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및 EU의 탄소국경조정세 도입 논의 등이 본격화됨에 따라 ESG 경영의 중요성이 현실화 되고 있음
- 이러한 ESG 관리는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치 극대화에 기여할 것이라 예상되지만, 정책 등에 따른 급격한 경영체제 변화에 따라 리스크 발생 우려도 상존하고 있음
- 따라서, ESG 경영과 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회적 분위기와 이에 따른 기업 리스크 해소를 위해 기업의 ESG 경영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 마련이 절실함
- 기업은 실질적인 ESG 이행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경제단체, 대기업 중심으로 ESG 경영이 확산 중이나,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ESG를 경영부담(시간, 비용 등)으로 인식하거나, 체계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다수임

- ESG 등급 평가를 받은 충북 소재(본사 기준) 기업은 총 16개사 이며 전체 대비 19.5% 수준이며 다음과 같음

<충북 ESG 등급평가 16개 기업 ESG 현황(2020년 KCGS 기준)>

기업	상장 시장	ESG 통합등급	환경(E) 등급	사회(S) 등급	지배구조(G) 등급	업종 (세세분류)	'19년 ESG통합등급 (변동)
A사	KOSPI	A+	A	A+	A+	그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A+)
B사	KOSDAQ	A	B+	B+	A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업	B+ (1등급 up↑)
C사	KOSPI	B+	B+	B	B+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B+)
D사	KOSPI	B	B	B	B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B)
E사	KOSPI	B	B	B+	B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B)
F사	KOSPI	B	B	B	B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B)
G사	KOSDAQ	B	C	B+	B+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B)
H사	KOSPI	B	B	C	B	완제 의약품 제조업	(B)
I사	KOSPI	C	D	C	B	피아노 제조업	(C)
J사	KOSPI	C	D	C	B	원피가공 및 가죽 제조업	B (1등급 down↓)
K사	KOSPI	C	C	B	B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	(C)
L사	KOSPI	C	C	C	B	완제 의약품 제조업	(C)
M사	KOSPI	C	C	B	B	전자축전기 제조업	(C)
N사	KOSDAQ	C	D	C	B	완제 의약품 제조업	(C)
O사	KOSDAQ	C	D	D	B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C)
P사	KOSDAQ	C	D	C	B	의약품 화합물 및 향생물질 제조업	신규

※ 자료 : 한국지배구조원(KCGS), ESG 등급조회

나. 주요 검토내용

- 1) 상위법령에 대한 저촉여부에 대하여

- 「산업발전법」 제18조(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평가기준 및 지표) 및 제19조(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지속가능발전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관련 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음**
- 타 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구 분	조 례 명	제정일자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ESG 경영 지원 조례	2021.07.23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ESG 경영 지원 조례	의안발의(심사 전)
충청남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ESG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	의안발의(심사 전)

2) 조례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는 “ESG 경영”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
 -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하여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함
- 안 제3조는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5조는 도지사로서 하여금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추진 방향 및 목표의 수립, ESG 경영 확산 추진과제 및 지원방안, 기업의 자율적 ESG 경영 확대 방안 등을 포함하는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안 제6조는 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지원 사업**들을 명시함
-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ESG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ESG 경영 지원위원회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안 제10조는 ESG 경영 지원에 관한 정보공유, 연구·조사 등을 위하여 도, 정부, 시군, 교육청,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다. 종합 검토의견

- ESG 경영 공시 의무화 등 정부정책방향과 국민인식 등을 볼 때 ESG경영은 앞으로 기업의 생존을 좌우할만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여 지며, 이에 따라 기업들은 점차 ESG 경영환경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 ESG 경영을 통해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발굴을 통한 매출증대, 기업 인식변화에 따른 인재 유입, 탄소중립 등에 따른 비용절감 등 다양한 관점에서 기업의 가치를 유지·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예상됨
- 그러나, 다수의 기업들이 ESG 등급평가 기준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영진의 적극적인 참여의사(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식 및 역량)가 부족한 상황으로 변화하는 환경변화에 대응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짐
- 따라서, 도 차원에서 지역기업에 대한 ESG 경영 확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의견 수렴 등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 관내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추진계획) 도지사는 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추진 방향 및 목표의 수립
2.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추진과제 및 지원방안
3. 기업의 자율적 ESG 경영 확대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ESG 경영 지원) 도지사는 충청북도 내 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인 대상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평가 등급 진단 및 컨설팅 비용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ESG 경영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ESG 경영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ESG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ESG 경영 지원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ESG 경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정부, 충청북도 관할 시·군, 충청북도 교육청, 관련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ESG 경영 지원에 관한 정보공유, 연구·조사 등을 위하여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존속기한) 제7조에 따른 위원회는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간 존속한다.

제12조(적용) 위원회 관련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산업발전법

제18조(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평가기준 및 지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을 위하여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 및 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과 지표를 활용하여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평가하고 그 결과를 산업발전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① 정부는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이하 “지속가능경영”이라 한다)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촉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지속가능경영의 국제표준화 및 규범화에 대한 대응 방안
3. 지속가능경영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4. 기업의 자율적인 지속가능경영 기반 구축 및 확대 방안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 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가 제8항에 따른 지원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⑧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속가능발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충청북도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도내 기업인 대상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 ESG 경영 평가 등급 진단 및 컨설팅 비용 지원

2. 비용 발생 요인

- 도내 기업인 대상 ESG 경영 교육 지원 사업의 수행
- ESG 경영 평가 등급 진단 및 컨설팅 비용 지원 사업의 수행

3. 관련조문

- **안 제6조(ESG 경영 지원)** 도지사는 충청북도 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인 대상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평가 등급 진단 및 컨설팅 비용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안 제9조(위원회의 운영)**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원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ESG경영위원회 15명, 연 1회 정기회의 개최에 따른 위원회 수당 지급
 - 15명*연1회*130천원 = 1,950천원
- 기업인 대상 ESG 경영 홍보
 - 추가비용 없음*
 - * 旣시행 충청북도 비즈알리미(카카오톡) 채널 활용
- ESG 경영 평가 등급 진단 및 컨설팅 비용 지원
 - 충북 소재 기업 중 66개社는 ESG 평가 의무화('30), 대상 업체 수 증감 고려하여 연10개 기업씩 ESG 평가 및 컨설팅 지원 예정
 - 협력사 ESG 지원사업 : 5,000천원*연10개기업*협력업체10개 = 500,000천원
 - * 협력사 ESG 교육, 평가 및 컨설팅 지원에 협력업체 30개 기준 1.5억원 소요(동반성장위원회)
 - ** 응답비율 기준 1개 원사업자는 약 10개 협력업체와 거래(공정거래위원회)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상장사-협력사 ESG 지원 사업	2,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ESG 경영위원회 수당 지급	9,750	1,950	1,950	1,950	1,950	1,950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10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						
세 출	501,950	501,950	501,950	501,950	501,950	2,509,750
위원회 참석수당	1,950	1,950	1,950	1,950	1,950	9,750
ESG경영 교육 및 평가등급 진단 지원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500,000
재원 조달	501,950	501,950	501,950	501,950	501,950	2,509,75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501,950	501,950	501,950	501,950	2,509,750
	지방세	501,950	501,950	501,950	501,950	2,509,75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구·군비						
기 타						